



### 3 등록내용을 확인 · 증명하고 싶을 때

#### 3-1 주민등록의 내용을 확인 · 증명하고 싶을 때

주민등록을 해서 주민기본대장(주민표)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는 거주하는 시구청촌의 관청에서 「주민표의 사본」이나 「주민표기재사항증명서」(필요한 항목만을 기재한 증명서)를 발행 받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「주민표의 사본」이나 「주민표기재사항증명서」는 자격의 취득이나 취직 등에서, 일본에서의 주소나 신분에 관한 증명서가 필요할 때 발행할 수 있습니다.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의 사람이 시구청촌의 관청에서 청구합니다. 그 이외의 사람이 신청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.

필요한 서류	제출처/문의처	수속료
1 주민표의 사본 등 교부청구서(용지는 시구청촌의 관청에 있습니다) 2 청구하는 사람의 본인 확인 서류 <대리인이 청구할 경우> 3 위임장	주소(주거지)의 시구청촌의 관청	유료. 시구청촌이나 세대 중에 증명서가 필요한 사람수에 따라 다릅니다(200 엔 ~ 600 엔정도).